

의안번호	2213515
의 퇴 인	김현정의원
회 답 일	2025.10.16.
추계번호	25D5503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4조의6 (급식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(제2항)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4조의6 (급식지원)	개정안은 급식지원의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급식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상세 사유

-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¹⁾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식 제공의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1)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
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의안번호 제2213509호)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의안번호 제2213510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의안번호 제2213511호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제2213515호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제2213517호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, 제2213518호)

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2025년 8월말 기준 개정안에 따른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유가족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 보훈대상자 현황: 2025.8.기준
(단위: 명)

구분	본인	유가족			합계
		수권유족	비수권유가족	소계	
독립유공자	4	9,015	82,636	91,651	91,655
국가유공자	158,993	274,768	1,185,546	1,460,314	1,619,307
보훈보상대상자	6,363	2518	21,043	23,561	29,924
참전유공자	102,009	-	-	-	102,009
5·18민주유공자	3,376	1,112	12,420	13,532	16,908
특수임무유공자	1,313	1,141	5,461	6,602	7,915
합계	272,058	288,554	1,307,106	1,595,660	1,867,718

주: 1) 상기의 인원은 고엽제후유의증, 장기복무제대군인, 경상이자는 제외된 것임

2) 상기의 인원은 대상구분별 중복인원이 제외된 실인원임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급식지원의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절차 등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 대상인원, 급식지원 방법, 급식지원 적정 단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,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²⁾과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³⁾는 결식아동급식과 결식노인급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, 급식제공의 대상·방법·단가는 아래와 같음

2) 「아동복지법」

제35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
3)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결식아동급식: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타(2024년 기준 272,400명) / 시설급식·일반음식점·도시락배달 등 / 1식 9,500원 이상(아동급식카드 기준) 【참고자료1】
- 결식노인급식: 결식 우려 노인 / 경로당급식·도시락배달 / 1식 약 4,000원(지자체별 상이) 【참고자료2】
-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전체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, 이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「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순증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- 또한, 시설급식·도시락배달·급식바우처 제공 등 급식지원의 방법에 따라 그 단가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,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급식지원의 방법과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인원, 방법, 단가 등을 추정할 정보가 없어, 6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- 참고로,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, 국가보훈부는 2026년 보훈회관 또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“보훈단체 복지지원” 시범사업(지자체 경상보조)을 계획하고 있음 【참고자료3】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

참고자료1

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요 (자료: 보건복지부)

- (추진근거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
 - '05년 지방이양으로 지원기준·방법·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
 - * 보건복지부는 「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」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
- (지원대상) ▲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정 등의 아동, ▲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*, ▲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복지관) 등 총 272천명('24년)

구분	계	기초수급자	차상위계층	기타*
'24년	272,400	164,143(60.2%)	14,069(5.2%)	94,188(34.6%)
'23년	277,394	164,509(59.3%)	14,323(5.2%)	98,562(35.5%)
'22년	283,858	165,698(58.4%)	15,328(5.4%)	102,832(36.2%)

* 한부모, 긴급복지, 중위소득 52% 이하, 지역아동센터·복지관 이용 등

- (지원기준) ('25년) 1식 9,500원 이상 지원 권고('24년 1식 9,000원)
- (시행주체)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·지원

구 분	학 기 중				방학중(연중)
	평일		토·공휴일		
	조·석식	중식	조·석식	중식	조·중·석식
기관명	지자체	교육청	지자체	교육청	지자체

*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(조·중·석식)을 선택하나, 평균 1일 1~2식 제공

** 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제공

- (전달체계) 개인 신청, 지역사회 발굴·추천(읍·면·동, 시·군·구 등) → 대상자 접수·자격기준 조회·결정(시·군·구) →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제공
- (급식제공유형) 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, 복지관), 일반음식점(아동급식카드), 도시락 배달, 기타 그 밖의 시·군·구청장이 정하는 방법(부식 지원, 식품권 등)
 - (아동급식카드 사용방식) 1회 사용 한도 15,000원 ~ 최대 40,000원, 한달 분씩 충전하며 급식가맹점에서 사용, 잔액은 이월 가능, 신용카드사와 제휴 (15개 시도)

참고자료2

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개요 (자료: 보건복지부)

□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

구분	경로식당 무료급식	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급식 대상	-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-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~59세의 자	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-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~59세의 자 등
급식 기관	경로식당(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, 주 3회 이상 급식/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[읍·면지역 10인 이상], 주1회 이상 급식 가능)	밥, 국, 밑반찬, 죽 등 가정식·치료식(당뇨병, 고혈압) 등 제공
비용	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, 차상위계층 노인 무료, 그 외 실비	

□ 2024년도 지역별 급식 단가 현황(기준: 2024.5.31. 기준 / 단위: 원)

구분	경로식당 무료급식	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*
서울특별시	4,000~5,500	4,000~6,000
부산광역시	3,500~4,000	3,500~4,000
대구광역시	3,500	2,300~14,500
인천광역시	3,500	3,500
광주광역시	4,000	4,000
대전광역시	4,000	4,000
울산광역시	3,500	4,000~5,500
세종특별자치시	미운영	5,000
경기도	4,000	4,000~8,000
강원특별자치도	3,000~6,000	3,500~11,000
충청북도	3,500~5,000	2,500~9,500
충청남도	3,500~5,000	3,500~20,000
전북특별자치도	4,000~4,500	5,000~6,000
전라남도	5,500	5,500
경상북도	4,000	4,000
경상남도	3,300	2,500~15,000
제주특별자치도	5,500	5,500

*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~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,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

□ 사업개요

-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훈회관 복지지원을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
- 보훈회관,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심 지원

□ 사업방식 : 지자체 경상보조

- (사업방식)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*에게 식사비 지원
 - * 연 인원 729천명 전망 (1회당 시,구 단위 80명, 군 단위 40명)
 - ** 지자체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설계, 보훈대상자 참석 유도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자체 지원 (110개 단체, 6백만원)
- (비용분담) 신청 지자체 매칭(50:50), 자부담 1천원* 적용
 - * 현재 보훈회관에서도 2~3천원 자부담 중

□ 예산소요 +1,789백만원

- 年 3,578백만원 (국비 50% 1,789, 지방비 50% 1,789백만원)
 - (점심지원) 국비 점심 1회 2천원 × 年 729천명 = 1,459백만원
 - (프로그램) 국비 年 3백만원 × 110 = 330백만원

< 보훈회관 점심·여가 지원 상세내역 >

1. 식대단가 : **5천원** (자부담 1, 국비 2, 지방비 2)
2. 지원인원 : **110개 단체**, 시·구 80개(日 80명). 군 30개(日 40명)
3. 지원일수 : 행사일정 고려 주 **2회·월 8회, 12개월**
4. 프로그램 운영비 :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고려 프로그램 운영비 **6백만원**